

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

태봉초등학교

제1조(개념)
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
제2조(지침)

-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(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)
- ②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- ③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-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- ⑤ 학교의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'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'미인정 결석'으로 처리한다.
-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-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
제3조(학습 형태)

- ① 가족동반여행
- ② 친인척 방문
- ③ 답사·견학활동
- ④ 체험활동
- ⑤ 가정학습

제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
-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 -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 -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
 -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
-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
제5조(결과 처리)

- 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-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